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21. Vol. 109 No. 2 pp. 37~68 http://dx.doi.org/tws.2021.109.2.002

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누구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미영*

초 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기혼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 조사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64세 여성 3,483명과 남성 3,323명을 대상으로 토빗회귀분 석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은 근로시간, 경제적 의존성의 제곱항, 성역할 인식과 관련 있었다. 근로시간은 부적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과 성역할 인식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월 30만원 기본소득의 경우 여성의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변화가 없었으나 50만원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은 일탈적 성역할을 상쇄하기 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하는 여성에서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과 관계없이 경제적 독립성이 강한 남성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적 협상력에 따라 돌봄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소득은 여성 집단을 계층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기본소득, 젠더, 돌봄노동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myan@kookmin.ac.kr)

I. 서 론

한국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성은미(2002)를 포함한 학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시작으로 2009년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의 설립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기본소득은(박이은실, 2014a: 9) 한국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요구나 자산조사 없이 개인단위로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제공하는 소득이며(Van Parijis, 2004: 8)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이라는 제도적특징을 지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민간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기존복지지출과기본소득을 포함한 전체 지출은 316조원으로 GDP의 16.4%를 차지한다(김필헌, 2020). 재원 마련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격론에 가깝다. 실현가능성과 더불어 한국복지국가의 분배원리로서의 바람직성에 대한 논쟁 역시 학계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에 대한 논쟁에는 젠더, 여성 관점에서 논의도 등장하 고 있는데 고무적인 현상이다. 판 빠레이스(Van Parijs, 1992)는 "Competing Justifications of Basic Income"을 1992년에 출판하는데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 학자들은 1990년에 출간된 에스핑 엔더슨(Esping Andersen, 1990)의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으로 증폭된 비교복지국가론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당시 페미니즘 학자들, 남성생 계부양자 모델을 주창한 Lewis(1992)를 포함하여, Sainsbury(1996), O'Connor(1993) 등은 그 복지국가 논쟁 한 복판에 있었으나 그들의 젠더평 등을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에는 기본소득이 등장하지 않는 다. 반면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1994년 Wollstoncraft(1792)가 제시한 젠더평등에 관한 딜레마 관점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글을 출 판한다(Fraser, 1994). 해당 논문의 주석에서(1994: 615) 기본소득을 명시적 으로 언급하는데 맥락은 이러하다. 탈산업화 시대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 서 복지 급여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육서비 스가 시민권으로서 존재하는지, 정부가 돌봄노동을 필요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지 또는 유급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시민권에 기 반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프레이저가 젠더평등의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한 보편적 돌봄자 모델(Universal care-

giver model)(Fraser, 1994)은 최근까지 유럽 여성주의 학자들의 복지국가 논의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지만 (Ciccia and Bleijenbergh, 2014) 기본 소득은 관련 논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구 여성주의 학자들의 복지국 가와 젠더평등에 대한 논의와 달리 한국 학자들은 기본소득과 젠더평등의 문 제를 활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김미정, 2010; 김혜연, 2014; 박이 은실, 2013: 2014a: 2014b; 안숙영, 2020; 윤연숙, 2012; 윤자영, 2016: 2017: 2018; 장지연, 2011). 특히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바탕으 로 젠더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주희, 2012; 이지연·김수연, 2020; 김교성·이나영, 2018; 이지은·김교성, 2021).

지난 반세기동안 일-복지(Work-welfare) 연계에 충실해 온 한국 복지국가 문턱 주변부 어딘가에서 서성여왔던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은 제더평등을 위한 변혁적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정책대안으로 보여진다. 젠더평등 과 기본소득 논의에서 돌봄노동이 중요한 주제로 언급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 젠더평등에 가지는 함의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상 이하고 특히 경험적 근거 없이 확장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 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미치는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한 첫 경험적 연구로서 젠 더정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 확장에 기 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젠더정의

국내 연구진은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과 연계해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는 데 기본소득이 젠더평등에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더 적실하게 이해하 기 위해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인용하면서 남녀 사이(젠더간) 평등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는 젠더 간 뿐만 아니라 젠더 내 평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프레이저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제시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복지국가 역할을 강조한다. 젠더정의에 대한 그녀 의 생각을 설파하는데(Fraser, 1996), 젠더정의는 반드시 현재의 성별 노동 분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혁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이나 현재 의 성별 노동 분업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는 "모든"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위해 여성들 내에 존재 하는 "다름"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복지)국 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한 사회의 모든 여성이 사회적 평등을 누려 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울스턴크래프트가 제시한 딜레마적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평등을 위해, 여성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 적 역할을 유급노동자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해도 "모든" 여성이 사회 적 평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돌봄을 전담하 는 무급노동자 역할로 규정하고 정책 및 제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 역시 "모 든" 여성을 유익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 게 유급노동자로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후자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을 강화하게 된다. 동등함 (Sameness) 관점 이든 다름(Differences) 관점 이 든 모든 여성의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다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프레이저 의 젠더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간 문제와 함께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젠더 내 차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프레이저는 젠더정의를 저해하는 1)자원에 대한 접근의 다름(Differences in access to resources)과 2)문화적 가치의 계층화 (Hierachisation of cultural values)의 문제를 지적한다(Fraser, 1996; Anarte, 2020: 19-21 재인용).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은 통제력 및 협상력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정의 문화(Culture of recognition)는 여성을 예속적 상태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성 예속적 문화는 여성의 노동, 존재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남성의 노동과 존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는 사회적 대표성과 소통에서 가부장적 사회모델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희롱, 성폭력, 여성의 사물화(Objectification), 여성의 발언에 대한 가치절하 및 권력에서 제외 등으로 나타난다. 정부 역시 사회정책을 통해 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이 무엇인지를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간의 우열, 그리고여성 내에서 우열을 규범화 한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인정의 문화의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어떠한 정치 또는 정책적 시도도 그 사회의 여성이 경험하는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젠더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종류의 사회경제적 활동 또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여 인 정한다는 점과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다는 점에 서 프레이저의 젠더정의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지 상당히 중요한 함 의를 지니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기본소득과 무급노동에 대한 기존 논의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반된다. 긍정적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들은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을 강화하여 무급노동을 덜 하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Standing, 1992). 또는 기본소득이 여성이 주로 하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이며(Elgarte, 2008), 결과적으로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Zelleke, 2011). Molyneux(2009)는 여성에게 직접 제공되는 조건부 현금 지급이 엄마로서 여성의 역할 또는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해당 연구를 인용하면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무조건성이 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반면 O'Reilly(2008)는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의 젠더평등에 기여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기본소득만으로 젠더관계의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Robeyns(2001)과 Gheaus(2008) 역시 부정적인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의지를 낮추어 무급노동자의 역할을 고착시키며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예속된 상태가 지속 및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학자들의 의견 역시 상반되는데 윤자영 외(2010)는 저소득계층 여성들은 고소득계층 여성과 동일화되기 위해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전통적 성별 노동 분업이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장지연(2011)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가구소득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가용시간, 경제적 자원력 그리고 성역할 인식의 변화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무급노동이 의미 있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함의한다. 윤자영(2016)은 모든 종류의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이 돌봄노동을 보편화할 가능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김미정(2010)은 기본소득이 개인의유급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며 노동시간이 줄어든 남성은 무급 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기본소득의 노동 공급효과를 분석한 이승주(2017)의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따른 근로유인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지만 중위소득 이상의 미취업자가 시간제나 전일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기본소득에 따라 고용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승주(2020)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본 소득이 한부모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노동유인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개발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유급노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승주의 연구는 기본 소득으로 인해 여성의 무급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소득과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논의는 주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급노동에 미치는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학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무급노동에 대한 미시차원의 이론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지급이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3. 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젠더간 그리고 젠더내 차이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기존 이론과 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미시차원이론 중 경제적 자원력을 포함하는 이론을 활용하여 기본 소득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에 대한 분석은 남성과 여성뿐 만 아니라 여성 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시차원의 이론은 구체적으로 가용시간(Time availability), 경제적 자율성(Economic autonomy),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성역할 인식(Gender-role ideologies) 그리고 성역할 구조화론(Gender role construction)을 포함한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이론은 가용시간, 경제적 자율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강조한다. 가용시간론에 따르면 가사노동시간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Bergen, 1991).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자원론은경제적 의존성 또는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누구나 가사노동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자원 협상력을 기반으로 가사노동을 줄인다고 설명한다(Blood and Wolfe, 1960; Lundberg and Pollak, 1993: 1996). 하지만 Gupta(2006: 2007)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경제적 자원의 절대적 가치에 의해 달라

진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의존성이 아닌 경제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반면 성역할 인식을 주요 인자로 보는 입장은 전통적 성역할을 지닌 커플은 보다 전통적으로 노동분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Coverman, 1985). 반면 젠더구조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사노동은 반드시 경제적 의존성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Brines(1994)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혹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성역할에 상징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가사노동 을 한다는 젠더전시론(Gender display)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Kan(2008)은 영국 사례를 통해 배우자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은 여성이라도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자신의 가치부여에 따라 가사노동 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경제적 의존성의 영향은 개인의 성역 할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Brines(1994)는 젠더전시적 행태를 검증 하기 위해 Sørensen and McLanahan(1987)의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ED)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소득/임금-배우 자 또는 파트너 소득/임금)/(본인의 소득/임금+배우자 또는 파트너 소득/임 금)으로 측정된다. 경제적 의존성의 비선형적 영향관계로 젠더전시적 행태를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적 의존성과 제곱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한다. 반면 Kan은 경제적 의존성과 제곱항을 투입하고 경제적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론들은 이후 돌봄노동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돌봄노동은 가사노동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가사노동과 달리돌봄노동은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자 하지 않으며(Gauthier and DeGusti, 2012) 오히려 투자적(Investment) 성격이 강한 노동이다(Craig and Mullan, 2011). 따라서 주로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구축된 가용시간이나 경제적 자원의 영향 그리고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돌봄노동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방향의 영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Craig(2007)는 엄마들의 자녀돌봄 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발견한다. 오히려 엄마들은 그들의 여가시간이나수면시간 등 개인을 위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고학력 엄마들은 그들의 경제적 자원력을 통해 자녀 돌봄을 덜 하지 않고 오히려더 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Gupta가 주장하듯 임금이 높은 여성이 반드시 적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지 않는다 (Hallberg and Klevmarken, 2003)

미시차원 이론을 활용한 가사노동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소영·진미정, 2016; 김수정·김은지, 2007; 배호중, 2015; 안미영, 2017; 안미영·최지은, 2020a: 2020b; 오지혜, 2016; Kim, 2013). 최

근 몇몇 연구들이 미시차원 이론을 돌봄노동에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n(2018)은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소득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돌봄노동 분담률에 주요한 영향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안미영·최지은(2020a)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20-54세 학령기이하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진보적 성역할 인식은 돌봄노동 시간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협상력은 10세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요 한계는 첫째 돌봄 노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 반영되어야할 것이고 여성이나 남성의 돌봄노동에 미치는 배우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들이 포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미시차원의 이론을 적실하고 포괄적으로 조작화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젠더전시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적 의존성과 제곱항 그리고 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인식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포함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 째 기본소득을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용 시간이 변할 것이며, 임금 획득을 통해 경제적 자원력이 달라질 것이며, 성역 할 인식에 대한 노출 이론이 제시하듯(Bolzendahl and Myers, 2004) 직장 생활을 통해 성역할 인식이 더 진보적으로 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여성의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성의 돌봄노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기본소득이 실제 집행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포착될 수 있다. 물론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다. 현재까지 무급노동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경제적 자원력과 젠더전 시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한 경험 적 분석은 관련 논의를 획기적이며 적실하게 확장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 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절대적 및 상대적 자원력을 즉 각적이며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젠더전시론은 경제적 협상력에 따 라 가사노동이 달라지지 않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은 여성이 나 남성의 무급노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젠더전시 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절대 및 상대적 자원력 그리고 젠더전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여

성 집단만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내 다양한 집단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의존성, 즉 경제적 협상력의 이론적 타당성을 부정하고 절대적 소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율성을 주장한 Gupta(2007)는 여성 집단만 분석하였다. 이는 경제적 의존성이론을 지지한 Brines(1994)나 Greenstein (2000)가 남성과 여성 모두 분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상당수의 국내 연구들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허수연·김한성, 2019; 조성은·문숙재, 1998; 이창순, 2014; 주익현, 2020; 장인수, 2020) 비맞벌이 부부와 동시에 비교하지 않는 결과 젠더화된 노동분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적실하게 증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절대적 자원, 상대적 자원 그리고 젠더전시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여성 집단 전체, 남성 집단 전체 그리고 여성을 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으로 달라지는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 소득, 즉 경제적 자율성은 돌봄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본소득으로 달라지는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소득, 즉 경제적 의존성은 돌봄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을 통한 젠더전시적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기본소득은 "모든" 여성의 돌봄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Ⅲ.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첫 조사 이후 5년마다 10세 이상 한국인의 시간 사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9년에 실시되었으나 이전 조사와 달리 개인 소득인 0인 사례가 구분되지 않는 한계로 본 연구는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첫째 경제적 자율성과 의존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작화 하기 위해 개인 소득 0이 구분되어 수집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0인 경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의존성은 없음(값 0)이 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부부가 모두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있지만 경제적 의존성은 여전히 없음(0)이다. 즉 기본소득 제공으로 개인의

절대적 소득은 증가하고 상대적 소득력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0인 경우와 다르다. 2014년 조사는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800개를 추출하고 조사구 마다 15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11,986가구의 26,98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마다 수집한 시간 사용 요일이 다른데 표본가구의 약 40%는 평일 이틀, 약 40%는 평일 하루와 주말 하루, 나머지 약 20%는 주말의 시간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는 20세 이상 64세 이하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남성과 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선 정하였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집단의 사이즈가 다르다. 가구주이거나 배우자 이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례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심신장애나 은퇴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여성 3,483명, 남성 3,323명이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돌봄노동은 가족에 대한 돌봄 중 만 10세 미만과 만 1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여성가족패널 이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과 달리 생활시간조사는 주행동과 돌봄행동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음악을 켜놓고 아이 식사를 먹이는 경우 응답자는 무엇이 주행동이고 동시행동인지 결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더 포괄적이며 밀도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안미영·최지은, 2020a) 돌봄노동을 밀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동시행동을 종속변인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그리고 기타 돌보기에 대한 시간 사용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여성의 경우 11.9%가 10분 이상동시행동으로 돌봄에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5.2%가돌봄 관련 행동을 동시행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생활시간 조사는 모든 응답자의 주중 및 주말 사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주중과 주말의 돌봄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봄노동 평균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할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김진 욱·권진, 2017), 주중과 주말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되 주중 vs 주말 변인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안미영, 2017; 은기수, 2019; 손문금, 2005). 세 번째 방법은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돌봄노동시간을 산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Yoon 2010; 안미영·최지은, 2020a: 2020b). 본 연구는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하루 평균 돌봄노동 시간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주말 시간 사용은 주중과 의미 있게 다르기 때문에 주중 2일을 기준으로 하여응답 요일을 통제하기로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주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미시차원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조작화 하였다. 먼저 가용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보고된 일 관련 활동에 할애한 시간 정보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측정하기로 한다. 일 관련 행동에는 주업, 부업, 농림어업 무급가족 일, 농림어업 외 무급가족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구그리고 기타 일 관련 행동을 포함하고 구직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경제적 자율성과 의존성은 생활시간조사가 제공하는 개인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 소득 정보를 구간으로 수집하고 있어 그 한계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과 남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관한 이해 구축에 생활시간조사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은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생활시간조사의 소득자료 수집 방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구간으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월평균소득 "없음" (1로 코딩)부터 50만원 단위로 증가하여 "500만 원 이상"까지 12개의 범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범주에 0부터 11의 값을 부여 하였다.

경제적 의존은 앞서 언급한 Sørensen and McLanahan(1987)의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계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적 의존성은 -1에서 1의 값을 갖게 되는데 0이면 부부간 경제적 의존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이 0보다 크면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높고, 0보다 적으면 남성이 소득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이 0보다 크면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고 0보다 적으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무소득 부부의 소득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소득이 0인 가구도 분석에 포함하기로 한다. 성역할 인식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에 동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응답범주는 1)적극 찬성 2)찬성 3)반대 4)적극 반대로 값이 클수록 진보적인 인식으로 간주한다. 젠더전시적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Brines(1994)와같이 경제적 의존성과 제곱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Kan(2008)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역할 인식에 따라 경제적 의존성의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3) 통제변수

여성과 남성의 만 나이를 투입하고 연령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곱항을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정도와 수학여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안 받았음 (0),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4년제 미만 대학교(4), 4년제 이상 대학교(5), 대학원 석사과정(6), 대학원 박사과정(7)으로 초등학교이상 졸업한 경우만 해당 교육수준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응답범주는 1)매우 좋음, 2)좋은 편, 3)보통, 4)나쁜 편, 5)매우 나쁨 이다.

가구 수준 변인으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거주지와 주택소유를 포함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첫째 10세 미만 가구원수를 투입하였다. 10세 미만의 경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그리고 기타 돌보기 등의 돌봄 노동이 집중되는 연령대이기때문이다. 특히 미취학자녀 여부와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의 여부는 돌봄노동 시간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입하였다.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가구별 가구원수 변인을 생성하였다. 가구별 가구원수 정보는 중요한데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월 가구소득은 전체가구원수*기본소득 30만원 만큼 상승하기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에 응답한가구원은 모두 10세 이상이다. 가구별 총 가구원수는 10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정보와 결합하여 생성하였다. 생성한 총 가구원수에서 10세 미만 가구원수를제외한 10세 이상 가구원수 변인을 포함하였다. 마지막 가구수준 변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00만원 미만(1로 코딩됨)을 시작으로 100만원 구간으로 700만원 이상 (8로 코딩됨)까지 구분하여지난 1년간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을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울, 인

천, 경기 (1)과 기타 지역(0)으로 구분하고 주택소유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요일을 주중 2일 (0), 주중 1일 주말 1일 (1), 주말 2일 (2)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투입되는 종속, 독립 및 통제 변수의 요약통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된 하루 평균 돌봄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83.17분 남성은 23.41분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50분, 330분 정도이고 여성의 한달 평균 소득은 2.03으로 2(50만원~100만원 미만)정도 수준인 반면 남성의소득은 6.48로 6(250만원~300만원 미만)과 7(300만원~350만원 미만) 수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심각한 소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은 -0.58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의존적임을 보여주고있다. 여성의 성역할 인식은 2.95로 남성의 2.54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기본소득은 월 30만원과 월 50만원이다. 월 30만원은 2020년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해당 안은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2029년 최소 월 5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월 30만원은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에 반영되었고(이지은·김교성, 2021), 앞서 언급했듯이 LAB2050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이기도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30만원과 연계해서 기본소득 규모로 자주논의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월 50만원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금액이기도 하고 박수범 외(2018: 108)이 사용한 모든 국민 중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정확히 501,632원)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생활시간조사의 개인 월소득은 50만원 증가에 따라 1씩 증가한다. 따라서월 30만원은 0.6 증가, 50만원은 1증가를 의미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전체가 구원수*기본소득(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월 소득이 증가한다. 생활시간조사의 가구소득은 100만원 증가에 따라 1씩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본소득 30만원과 50만원 지급 시 가구소득을 계산하였다. 〈표 1〉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월 30만원 지급은 여성의 소득을 2.03에서 2.63으로, 월 50만원 기본소득은 3.03 (3: 100만원~150만원 미만)으로 증가시킨다. 월 30만원 기본소득은 남성의 소득을 6.48에서 7.08로, 50만원 기본소득은 7.48로 증가시킨다. 즉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증진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증진시키는(이나영·김교성, 2018) 동시에 남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줄인다. 기본소득 30만원은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0.58에서

-0.48로, 50만원 기본소득은 -0.44로 감소시켜 이론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이 줄어, 즉 경제적 독립성 정도가 감소하는데 30만원과 50만원 기본소득은 남성의 경제적 독립성 정도를 각각 0.48, 0.44로 감소시킨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제적 자율성을 증진하는 젠더중립적 효과와 함께 부부 중경제적으로 의존적 위치에 있는 사람 (주로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을 증진하고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주로 남편)의 경제적 협상력을 감소시키는 젠더화된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통제 변인 중 주요 변인들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3.51로 고등학교 (3)과 4년제 미만 대학교 (4)의 중간 정도이며 남성의경우 3.82로 동일한 수준이나 여성보다 좀 더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성과 남성 각각 2.72와 2.62로 좋은 편(2)와 보통(3) 사이로 나타났다. 여성의 34.6%와 남성의 36%가 미취학 가구원이 있었고 여성과 남성의 1% 정도가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30.9%, 남성의 31.4%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여성의64.7%, 남성의63.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여성은 4.5, 남성은 4.58로 4(300~400만원미만)와5(400~500만원 미만)사이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30만원은 여성과 남성의 가구소득을 각각 5.42와5.51로 증가시키고 기본소득 50만원은 6.04, 6.14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여성 (<i>N</i> =	3,483)	남성 (<i>N</i> =3,323)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종속 변수	하루 평균 돌봄 노동 시간 (분)	83.71(126.32)	0-725	23.41(47.59)	0-400	
독립 변수	근로시간 (분)	149.06(205.47)	0-920	328.76(229.67)	0-1090	
인구	월평균 소득					
	기본소득 제공 전	2.03(2.4)	0-11	6.48(2.64)	0-11	
	월 30만원 기본소득	2.63(2.4)	0.6-11.6	7.08(2.64)	0.6-11.6	
	월 50만원 기본소득	3.03(2.4)	1-12	7.48(2.64)	1-12	
	경제적 의존성					
	기본소득 제공 전	-0.58(0.46)	-1~1	0.57(0.46)	-1~1	
	월 30만원 기본소득	-0.48(0.38)	-0.9~0.9	0.48(0.38)	-0.9~0.9	
	월 50만원 기본소득	-0.44(0.35)	-0.85~0.85	0.44(0.35)	-0.85~0.85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STATA 14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OLS)이 아닌 토빗(Tobit)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토빗분석은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으로도 불리는데 종속변수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중도절단(Censoring) 이 있을 경우 사용된다. 본 연구의 경우 남성의 하루 평균 돌봄노동시간이 0인 사례는 전체의 71.3%, 여성의 경우 57.3%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왼쪽 중도절단 0을 설정하여 토빗 분석을 실시한다. 토빗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선형회귀분석과 비슷하지만 종속변수가 아닌 잠재변수(Uncensored latent variable)에 대한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차항의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보고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를 모델 1로 구축하고 월 30만원의 기본소 득이 제공되는 경우를 모델 2,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경우를 모델 3으로 구축하기로 한다. 먼저 전체 기혼여성과 기혼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토 빗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여성을 근로여부 기준으로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Ⅳ. 분석 결과

〈표 2〉는 전체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 중 여성의 근로시간 1분 증가는 여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0.2분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가용시간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율성(절대적 소득)은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의존성 역시 관계가 없는 반면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이 양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적이거나 또는 매우 독립적인 여성이 덜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인 여성에 비해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또는 덜 할애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인식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성역할 인식 값 1 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시간 5.78분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인식론의 설명과 달리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닌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64세 한국 기혼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경제적 협상력의 영향은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통제변인 중 먼저 연령은 양의 관계, 연령제곱항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 역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수준 값 1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10.74분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와 호주나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 기혼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돌봄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시사한다. 여성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값 1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6.22분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근로시간 값 1증가는 각각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3.74분, 0.06분 상승과 관련 있다. 예측된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157.92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가구원 수 1명은 돌봄노동시간 57.76분 상승과 관련 있고 10세 이상 가구원 수 1명은 27.93분 증가와 관련 있다. 주중 1일 주말 1일 시간사용을 보고한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은 주중 2일 응답한 여성 보다 11.46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 2일 보고한 여성은 주중 2일 보고한 여성보다 43.04분 적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모델 2와 모델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고려한 모델 2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모델 1과 다르지 않다. 반면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고려한 모델 3에서는 모델 1에서 나타난 영향변수 중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 결과는 기본소득 월 50만원은 여성으로 하여금 젠더전시적 행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함의하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 그림으로 도식화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20-64세 기혼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토빗분석 결과 중 모델 1을 보면 독립변수 중 근로시간과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 그리고 성역할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혼여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1분 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0.07분 감소와 관련 있고, 성역할 인식이 1만큼 진보적인 것은 돌봄노동 시간 3.21분 상승과 관련 있었다. 경제적 의존성 항은 관계 없으나 제곱항의 양의 유의미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매우 높거나 또는 낮은 협상력을 지닌 남성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제적 협상력의 영향은 남성 스스로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 중 연령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연령 1세 증가는 남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1.25분 감소와, 아내의 교육수준 1증가는 남성의 돌봄노동 5.73분 증가와, 아내의 건강상태 1 증가 (안좋음 방향)는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5.12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의 변인 중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92.17분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이 많았고 10세 미만 가구원수 1명 증가 역시 돌봄노동 시간 23.71분 증가와 연관이 있다. 여성과 달리

주중 1일 주말 1일 시간사용을 보고한 남성은 주중 2일 시간사용을 응답한 남성보다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이 18.24분 더 많았고, 주말 2일 응답한 남성은 주중 2일 응답한 남성보다 23.9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와 3의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와 달리모델 1에 나타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인들에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모델 1에서 나타난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영향관계가 기본소득 투입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 통계치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소득 상승을 통한 경제적 자율성을 모두 증진하지만 경제적 의존성의 값의 변화는 여성에게는 더 독립성 확보의 의미이고 남성에게는 독립성 약화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존성 값의 하락은 남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에 시간을 덜 할애하지 않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전체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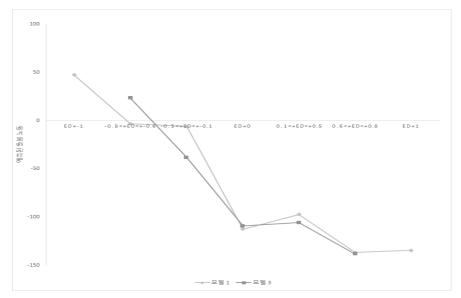
	여성			남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Robust S.E)					
연령	10.425*** (2.157)	10.354*** (2.155)	10.341*** (2.153)	7.460 ^{***} (1.417)	7.407 ^{***} (1.419)	7.396 ^{***} (1.419)	
연령 ²	-0.175 ^{***} (0.026)	-0.174*** (0.026)	-0.174*** (0.026)	-0.092*** (0.016)	-0.092*** (0.017)	-0.091*** (0.017)	
교육수준	10.737*** (2.086)	10.750*** (2.086)	10.768*** (2.086)	1.097 (1.358)	1.122 (1.356)	1.139 (1.356)	
근로시간	-0.203*** (0.012)	-0.204*** (0.012)	-0.204*** (0.012)	-0.069*** (0.006)	-0.069*** (0.006)	-0.069*** (0.006)	
소득	-0.528 (1.804)	-0.304 (2.056)	-0.276 (2.219)	-0.996 (1.327)	-1.160 (1.445)	-1.217 (1.530)	
경제적 의존성	3.141 (13.681)	-0.105 (18.408)	-2.543 (21.7)	-10.188 (8.564)	-13.343 (11.824)	-15.106 (14.139)	
경제적 의존성 ²	21.915 [*] (9.443)	28.339 [*] (13.448)	31.469 (16.128)	20.448** (6.058)	28.823 ^{**} (8.541)	34.068 ^{**} (10.203)	
성역할 인식	5.779 [*] (2.318)	5.797 [*] (2.329)	5.831 [*] (2.328)	3.211 [*] (1.391)	3.194 [*] (1.390)	3.181 [*] (1.388)	
성역할 인식*경제적 의존성	-6.083 (5.099)	-5.930 (6.020)	-5.826 (6.602)	0.284 (3.003)	0.703 (3.533)	1.062 (3.878)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6.223 ^{**} (2.284)	6.240** (2.284)	6.244** (2.284)	-3.421* (1.667)	-3.424* (1.667)	-3.422 [*] (1.667)	
배우자 연령	-0.807 (0.535)	-0.794 (0.535)	-0.79 (0.535)	-1.246** (0.387)	-1.250** (0.388)	-1.250** (0.388)	
배우자 교육수준	3.744 [*] (1.821)	3.791 [*] (1.821)	3.818 [*] (1.821)	5.728 ^{**} (1.421)	5.739 ^{**} (1.420)	5.75 ^{***} (1.42)	

	여성			남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 ,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배우자 근로시간	0.061*** (0.009)	0.061*** (0.009)	0.061 ^{***} (0.009)	0.011 (0.008)	0.011 (0.008)	0.010 (0.008)	
배우자 소득	0.908 (1.841)	0.324 (2.015)	0.069 (2.139)	1.363 (1.281)	1.328 (1.444)	1.268 (1.550)	
배우자 성역할 인식	-3.494 (2.113)	-3.492 (2.111)	-3.498 (2.111)	-0.640 (1.559)	-0.634 (1.559)	-0.638 (1.560)	
배우자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0.642 (2.255)	-0.630 (2.256)	-0.62 (2.256)	5.119 ^{**} (1.699)	5.104 ^{**} (1.699)	5.095 ^{**} (1.699)	
미취학 가구원 여부	157.923*** (5.489)	158.051*** (5.495)	158.143*** (5.498)	92.166*** (4.113)	92.278*** (4.119)	92.351*** (4.122)	
10세 미만 가구원수	57.756**** (2.829)	59.555**** (2.975)	60.77 ^{***} (3.19)	23.710 ^{***} (2.067)	24.219*** (2.204)	24.612*** (2.379)	
돌봄 필요 성인 가구원수	19.313 (19.477)	19.365 (19.414)	19.39 (19.381)	3.673 (19.225)	4.051 (19.131)	4.269 (19.094)	
10세 이상 가구원수	27.927*** (2.352)	29.753*** (2.677)	30.977*** (3.006)	2.954 (1.986)	3.502 (2.244)	3.911 (2.488)	
서울/인천/경기	6.407 (3.490)	6.388 (3.489)	6.371 (3.489)	-1.084 (2.512)	-1.104 (2.513)	-1.123 (2.514)	
주택소유	-0.214 (3.480)	-0.312 (3.481)	-0.327 (3.482)	-0.033 (2.412)	-0.131 (2.417)	-0.149 (2.419)	
가구소득	-5.923 [*] (2.721)	-6.000* (2.744)	-6.033 [*] (2.754)	-1.301 (1.984)	-1.582 (2.010)	-1.712 (2.023)	
주중 2일							
주중 1일 주말 1일	-11.465** (3.806)	-11.557** (3.808)	-11.593** (3.809)	18.240*** (2.653)	18.192*** (2.654)	18.178*** (2.653)	
주말 2일	-43.035*** (5.384)	-43.205*** (5.383)	-43.292*** (5.384)	23.898*** (3.755)	23.787*** (3.756)	23.744*** (3.756)	
Intercept	-280.315 ^{**}	-277.042** *	-275.47*** (44.212)	-212.835 (29.501)	-208.998 (29.537)	-207.289 (29.562)	
Log pseudolikelihood	(44.396) -21575.919	(44.265) -21576.978	-21577.582	-14429.466	-14429.74	-14429.964	
Number of obs	6966	6966	6966	6646	6646	6646	
Uncensored	3394	3394	3394	2366	2366	2366	
Left-censored	3572	3572	3572	4280	4280	4280	
Pseudo R ²	0.156***	0.156***	0.156***	0.134***	0.134***	0.134***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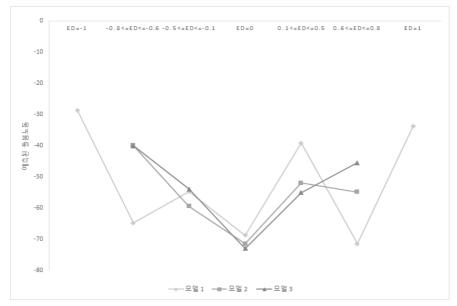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의존성 제곱항의 영향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토빗모형이 예측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결과를 도식화 하였다. [그림 1]은 여성의 모델 1과 모델 3의 결과를 도식화하고 있다.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즉 경제적의존성(ED)이 -1 이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1

인 사례가 사라지고 ED가 -0.85에서 0.85의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모델 1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0.5이상 -0.1이하의 경우(전체 여성의 30.1%), 더 의존적인 여성, 즉 경제적 의존도가 -0.8이상 -0.6이하 여성보다(전체 여성의 9.8%)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젠더전시적 행태가 돌봄노동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델 3은두 그룹 간의 돌봄노동이 경제적 의존성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월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 3에서 경제적 의존성이 -0.5이상 -0.1이하인 여성은전체에서 32.5%를 차지하는데 해당 여성이 바람직한 돌봄자 역할을 상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젠더전시를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할 것은 남편의 소득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독립적인 여성, 즉 경제적 의존성이 0.1이상 0.5이하인(모델 1에서 전체 여성의 6.6%, 모델 3에서 전체여성의 6.2%)인 여성은 경제적 의존성이 0, 즉 남편의 소득과 동일한 여성에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덜 할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경제적 의존성 (Economic Dependency, ED)에 따른 여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그림 2]는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에 따른 돌봄노동에 대한 모델 1, 2, 3의 토빗 분석 결과에 대한 도식이다.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월 50 만원으로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은 최대 0.85, 최소 -0.85로 변화하며 기본 소득 30만원으로 -0.9에서 0.9 범위로 변화한다. 모델 1 결과를 보면 남성의 돌봄노동이 경제적 의존성과 선형관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의존성이 -1인 남성(전체 1%)과 1인 남성의(전체 44%) 돌봄노동이 거의 차이가 없다. 즉 경제적 협상력이 높은 남성이 반드시 적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지 않는다. 모델 2, 3은 남성의 소득이 아내보다 높은 경우 (경제적 의존성이 0보다 큰) 의존성이 0인(부부소득 동일) 경우에 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경제적 의존성 (Economic Dependency, ED)에 따른 남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표 2〉의 결과만 놓고 보면 확실히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젠더화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모든 여성에게 유익을 주는 제도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여성 집단을 근로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표 3〉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근로여성과 비근로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근로	여성	비근로여성		
	모델 1	모델 3	모델 1	모델 3	
	Coef.	Coef.	Coef.	Coef.	
		(Robust S.E)			
연령	8.543***	8.557***	11.256***	11.173***	
	(2.191)	(2.192)	(3.036)	(3.032)	
연령 ²	-0.138***	-0.138***	-0.185***	-0.184***	
	(0.025)	(0.025)	(0.037)	(0.037)	
교육수준	3.217	3.219	14.630***	14.572***	
	(2.102)	(2.098)	(3.004)	(3.003)	
근로시간	-0.103*** (0.011)	-0.103*** (0.011)	_	-	
소득	-0.339	-0.521	1.813	1.188	
	(1.760)	(2.187)	(3.230)	(3.930)	
경제적 의존성	-6.131	-11.726	9.899	22.849	
	(13.399)	(22.922)	(25.247)	(36.078)	
경제적 의존성 ²	17.657*	19.332	5.650	15.658	
	(8.899)	(16.204)	(17.047)	(25.359)	
성역할 인식	3.710	3.603	4.937	6.540	
	(2.456)	(2.472)	(3.228)	(5.894)	
경제적 의존성 [*] 성역할 인식	-1.096	-1.515	-1.290	4.115	
	(6.108)	(7.565)	(9.247)	(11.953)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3.106	3.069	10.285**	10.304**	
	(2.373)	(2.377)	(3.130)	(3.128)	
남편 연령	-0.687	-0.661	-0.636	-0.636	
	(0.504)	(0.503)	(0.778)	(0.779)	
남편 교육수준	3.227	3.294	4.116	4.032	
	(1.719)	(1.721)	(2.647)	(2.651)	
남편 근로시간	0.043***	0.042***	0.058***	0.059***	
	(0.009)	(0.009)	(0.012)	(0.012)	
남편 월 평균 소득	0.763	0.402	-1.226	-0.844	
	(1.963)	(2.319)	(2.652)	(3.107)	
남편 성역할 인식	-3.336	-3.371	-2.817	-2.840	
	(2.259)	(2.258)	(2.982)	(2.984)	
남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2.745	-2.724	1.818	1.828	
	(2.340)	(2.344)	(3.040)	(3.043)	
미취학 가구원 여부	71.609***	71.705***	212.622***	212.808***	
	(4.993)	(5.009)	(8.333)	(8.339)	
10세 미만 가구원수	65.019***	67.817***	44.905***	45.959***	
	(3.126)	(3.531)	(4.003)	(4.492)	
돌볼 필요 성인 가구원수	15.186	16.272	-2.154	-3.067	
	(11.169)	(10.995)	(36.793)	(36.574)	

	근로 여성		비근로여성		
	모델 1	모델 3	모델 1	모델 3	
	Coef.	Coef.	Coef.	Coef.	
	(Robust S.E)	(Robust S.E)	(Robust S.E)	(Robust S.E)	
10세 이상 가구원수	22.558***	25.240***	21.518***	22.624***	
	(2.374)	(2.978)	(3.607)	(4.531)	
서울/인천/경기	-0.255	-0.480	8.329	8.384	
	(3.458)	(3.452)	(4.980)	(4.980)	
주택 소유	0.775	0.637	2.532	2.471	
	(3.574)	(3.574)	(4.877)	(4.874)	
월 평균 가구소득	-5.750*	-5.739*	-1.850*	-2.232	
	(2.622)	(2.652)	(4.070)	(4.110)	
주중 2일					
주중 1일 주말 1일	-3.125	-3.228	-13.608*	-13.616*	
	(3.753)	(3.762)	(5.473)	(5.472)	
주말 2일	-17.786**	-17.892**	-65.741***	-65.833***	
	(6.795)	(6.818)	(7.266)	(7.263)	
Intercept	-191.894***	-189.2648**	-320.565***	-320.699***	
	(43.892)	(43.769)	(64.454)	(65.857)	
Log pseudolikelihood	-7524.488	-7526.539	-13680.812	-13680.561	
Number of obs	3482	3482	3484	3484	
Uncensored	1248	1.248	2,146	2,146	
Left-censored	2234	2,234	1,338	1,338	
Pseudo R ²	0.18***	0.18***	0.13***	0.13***	

^{*}p<0.05, **p<0.01, ***p<0.001

〈표 3〉은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모델 1과 기본소득 50만원이 지급된 모델 3의 결과를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 3에서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영향 관계는 근로를 하는 여성에서만 사라진다. 반면 모델 1, 즉 기본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가용시간, 경제적 자율성, 경제적 의존성, 성역할 인식 그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노동은 미취학 가구원 여부, 10세 미만 가구원수, 10세 이상 가구원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교육수준과 중요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해 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64세 기혼 여성과 남성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의 돌봄노동은 가용시간론이 제시하듯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성역할 구조화론 즉 젠더전 시론이 제시하듯이 경제적 의존성과 돌봄노동 시간은 비선형적 영향관계를 보 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이 돌봄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돌봄자 로서의 역할에 상징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그러 나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론의 설명과 달리 성역할이 진보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 가지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흥미로운 결과는 남성 역시 여성과 마찬가 지로 돌봄노동을 통해 젠더전시적 행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 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성역할을 지니고 있는 경우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64세 한국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은 동일한 요인의 동일한 방향으 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노동을 통해 젠더전시 적 행태를 하고 있다는 점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사회적으로 팽 배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기본소득의 효과인데,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으로 여성의 돌봄노동에 미치는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이 사라 진 반면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은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전시 적 행태는 기본소득 적용시 사라지는 반면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의 돌봄노동 은 기본소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논의가 학자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추정"으로 발전하였다면 본연구는 돌봄노동의 젠더평등에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보여준다. 첫째 정부에 의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동일한 현금급여 지급은 한국사회 여성, 특히 (아직까지도) 일탈적 역할이라고 인식되는 근로를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역할 또는 한국사회에서 가치가 부여된 돌봄자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돌봄노동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남성은 기본소득으로 경제적 자율성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셋째 젠더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기본소득은 중요한 계층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계층화적 성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돌봄노동 차이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특정(근로하는) 여성 집단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젠더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효과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라 판단된다.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전체 기혼여성이나 전체 여성(미혼 등 포함) 특히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중요하다. 젠더정의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교성·이나영(2018).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3호. 7-33.
- 김혜연(2014). "기본소득 제안이 여성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회** 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33-63.
- 김미정(2010).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민주노총정책연구소 편. 1 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서울: 매일노동뉴스.
- 김소영·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 사 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65-84.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제41권 제4호. 147-174.
- 김진욱·권진(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5권. 181-215.
- 김필헌(2020).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6. TIP. vol 17.
- 박이은실(2013). "성체제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 제2호. 43-65. ____(2014a).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 고용, 노동중심 논의에서성적 주체성 실현 문제를 포함한 논의로". 페미니즘연구. 제14권 제1호. 3-34.
- _____(2014b). "기본소득, 성해방으로 가는 기본 열쇠". **여성이론**. 제31권. 28-76.
- 박수범·조선주·김해람·윤연숙·신동연(2018).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흩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151-181.
- 성은미(2002).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 기본소득(basic income):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노동**. 제5권. 41-61.
-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5권. 239-287.
- 조성은·문숙재 (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28권. 35-47.

- 주익현 (2020).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19-33.
- 장인수 (2020). "한국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2007, 2016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 446-476.
- 안미영(2017). "고령화와 젠더불평등: 무급노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93권 제2호. 7-24.
- 안미영·최지은(2020a). "한국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자녀 연령대에 따른 경제 적 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제25권 제 2호. 83-103.
- (2020b). "젠더 전시인가?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 여성경제연구. 제16권 제4호. 19-42.
- 안숙영(2020). "젠더의 렌즈로 본 기본소득: 가능성과 한계". 한국여성학. 제36권 제2호. 441-74.
- 오지혜(2016).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상대소득 및 절대소득 효과-교환이 론과 젠더보상이론을 넘어서".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233-270.
- 윤자영(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논집. 제33권. 3-29.
- (2017). 돌봄노동의 분배정의를 위한 기본소득[전자자료].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 (2018).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31-55.
- 윤자영·이숙진·최성애(2010). "기본소득과 성평등". 사회권과 돌봄·나눔의 공동. 제주인권회의 발표문. 제주, 한화리조트. 2010. 8. 25-27.
- 윤연숙(2012). "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의 함의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29권 제1호. 185-214.
- 이승주(2017).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 소득 재분배와 노동 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20). "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 정연구. 제29권 제4호. 199-232.
- 이주희(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 래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 제28권 제3호. 35-62.
- 이지은·김수연(2020). 기본소득과 젠더정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발제문 수정본 (2020.09.15.)
- 이지은·김교성(2021).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 구. 제37권 제1호. 119-150.

- 은기수 (2019). "한국 중학생의 성별 학습시간과 부모의 교육수준 2014년 생활시 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연구학 제42권 제1호.33-58.
-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 권 제2호. 29-54.
- 장지연(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제11권 제 2호. 1-47
- 허수연·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제64호. 5-29.
- An, M. Y.(2018). Gender Division of Childcare and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to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9, 129-138.
- Anarte, L. F.(2020). From Wollstonecraft's Dilemma to Nancy Fraser's theory of Gender Justice: A Proposal for the Analysi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UNIO EU Law Journal*, 6(1), 12-30.
- Bergen, E.(1991). The Economic Context of Labor Location: Implications for Gender Stratiffi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2, 140-157.
- Blood, R. O. and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Glencoe, IL: Free Press of Glencoe.
- Bolzendahl, C. I. and Myers, D. J. (2004). Feminist Attitudes and Support for Gender Equality: Opinion Change in Women and Men, 1974–1998. *Social Forces*, 83: 759–789.
- Brines, J.(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Ciccia, R. and Bleijenbergh, I.(2014). After the Male Breadwinner Model? Childcare Services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Politics*, 21(1), 50-79.
-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Craig, L.(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 69-87.

- Craig, L. and Mullan, K.(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34-61.
- Elgarte, I.(2008). Basic Incom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ur. Basic Income Studies, 3(3), 1-8.
- Esping Andersen, G.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N.(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Fraser, N.(1996). Redistribución v reconocimiento: Hacia una visión integrada de justicia del género.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sofía Política, No. 8 (1996), 18-40.
- Gauthier, A. H. and DeGusti, B. (2012). The Time Allocation to Children by Parents in Europe. International Sociology, 27(6), 827-845.
- Gheaus, A.(2008). Basic Income, Gender Justice and the Costs of Gender-symmetrical Lifestyles. Basic Income Studies, 3(3), 1-8.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Gupta, S.(2006). Her Money, Her Time: Women's Earnings and their Housework Hours. Social Science Research. 35, 975-999.
- (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399-417.
- Hallberg, D. and Klevmarken, A.(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 Kan, M. Y. (2008). Does Gender Trump Money? Housework Hours of Husbands and Wives in Britai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2(1), 45-66.
- Kim, Y-M.(2013). Dependence on Family Ties and Household Division on labour in Korea, Japan and Taiwa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9(2), 7-35.
- Lewis, J.(1992). Gender and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 European

- Journal of Social Policy, 2(3), 159-173.
- Lundberg, S. and Pollak, R. A.(1993). Separate Sphere Bargaining and the Marriage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6), 988-1010.
- ____(1996). Bargaining and Distribution in Marri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4), 139-158.
- Molyneux, M. (2009). *Conditional Cash Transfers: A Pathway to Women's Empowerment?* Pathways Brief. Pathways Brief of Women's Empowerment Number 5.
- O'Reilly, J. (2008). Can a Basic Become Lead to a More Gender Equal Society? *Basic Income Studies*, 3(3), 1-7.
- O'Connor, J. S.(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3), 501-518.
- Robeyns, I.(2001). Will a Basic Income do Justice to Women? *Analyse*, 23(1), 88-105.
- Sainsbury, D.(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ørensen, A. and McLanahan, S.(1987). Married Women's Economic Dependency 194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659-687.
- Standing, G. (1992). The Need for a New Social Consensus. In Van Parijs, P. (ed.). *Arguing for Basic Income: Ethical Foundations for a Radical Reform.* London: Verso.
- Van Parijs, P. (1992). Competing Justifications of Basic Income. In Van Parijs, P(ed.) *Arguing for Basic Income: Ethical Foundations for a Radical Reform.* New York: Verso.
- ____(2004).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32(1), 7-39.
- Wollstonecraft, M.(1792).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with Strictures on Political and Moral Subject. Printed at Boston by Peter Edes for Thomas and Andews.
- Yoon, J. Y. (2010). Gender Norms, Housework, and Class: A Study of

Korean Time Use Survey.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6(3), 112-138.

Zelleke, A.(2011). Femi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cy & Politics*, 39(1), 27-42.

Abstract

Basic Income and Care Work : Whose Time Changes and How?

Mi Young An*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care work time spent by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We conducted tobit regression analysis on a sample of 3,483 women and 3,323 men drawn from Time Use Survey conducted in 2014. Results show that both men and women's care work is associated with working hours(-), economic dependency squared term(+) and gender-role ideology(+). We found no effects of monthly basic income of 300,000won for women's care work. But with basic income of 500,000won, nonlinear effects of the economic dependency disappears. But such positive change is found among working women only. Men continues to do gender display with 300,000 and 500,000won of basic income. We contend that basic income may benefit working women by enabling them not to do gender display. It would make men do more care work going against their economic power. Thus basic income may have positive effects for between-gender difference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ay stratify by making significant within-gender differences among women.

Keywords: Basic income, Gender, Care work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